

「학과(부)평가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7. 3. 1. 개정 판 (시행 2017. 3. 1.) → 2021. 1. 22. 개정 판 (시행 2021. 1. 22.)

바뀜 3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14/compare?from=827&to=1068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42:5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학과(부)평가 기획연구위원회) ① 학과(부)평가의 기획·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(위원장), 평가팀장(서기), 부총장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사무처장, 연구처장, 입학처장, <u>인성교육원장</u>, 각 단과대학장,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, 서기는 평가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④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기준,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. 학과(부)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5조(학과(부)평가 기획연구위원회) ① 학과(부)평가의 기획·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(위원장), <u>기획</u> 평가팀장(서기), 부총장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<u>사무처장</u>, <u>대외협력처장</u>, <u>연구산학처장</u>, <u>입학관리본부장</u>, 각 단과대학장,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, 서기는 <u>기획평가팀장</u>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④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기준,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6. 학과(부)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8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7조(학과(부)평가 실무위원회)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(부)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평가팀장(위원장), 평가담당(간사), 교수지원팀장, 학생복지지원팀장, 연구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장은 평가팀장,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④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준,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제7조(학과(부)평가 실무위원회) ① 기획처 산하에 학과(부)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2-07-09> ②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<u>기획평가팀장</u>(위원장), 평가담당(간사), 교수지원팀장, 학생<u>부처장</u>, 연구<u>산학팀장</u>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-02-29> ③ 위원장은 <u>기획평가팀장</u>, 간사는 기획처 평가담당자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-01-22> ④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학과(부)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평가 기준,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. 학과(부)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현 행	개 정 안
⑤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	⑤ 학과(부)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제21조(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) ① (교원 재배치 지원)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양 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. <개정 2017-03-01> ② (학생 학습권 보장)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(최장 4년)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. <개정 2017-03-01>	제21조(구조개선 사후관리 조치) ① (교원 재배치 지원)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원할 경우 새로운 전공 수학을 위하여 1년간의 무급 휴직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폐과된 학과의 소속 교원이 새로운 전공 수학을 하지 않을 때에는 스미스학부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다. <개정 2017-03-01> ② (학생 학습권 보장) 구조개선 대상 학과 학생들을 위해 일정 기간(최장 4년) 해당학과의 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습권을 보장한다. <개정 2017-03-01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과(부)평가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학과(부)평가 기획연구위원회) ① 학과(부)평가의 기획·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.

②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기획처장(위원장), 기획평가팀장(서기), 부총장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입학관리본부장, 각 단과대학장,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, 서기는 기획평가팀장으로 하며,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과(부)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2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과(부)평가 기준,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4. 학과(부)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
5. 학과(부)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6. 학과(부)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학과(부)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학과(부)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⑤ 학과(부)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 중 "평가팀장(위원장)"을 "기획평가팀장(위원장)"으로 하고, "학생복지지원팀장, 연구팀장"을 "학생부처장, 연구산학팀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평가팀장"을 "기획평가팀장"으로 하고, "한다."를 "한다. <개정 2021-01-22>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교양대학"을 "스미스학부대학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